

군산 · 새만금 명품도시

Gunsan · Saemangeum
세계의 경제가 모여드는 곳
새로운 미래가 창조되는 곳

군산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관광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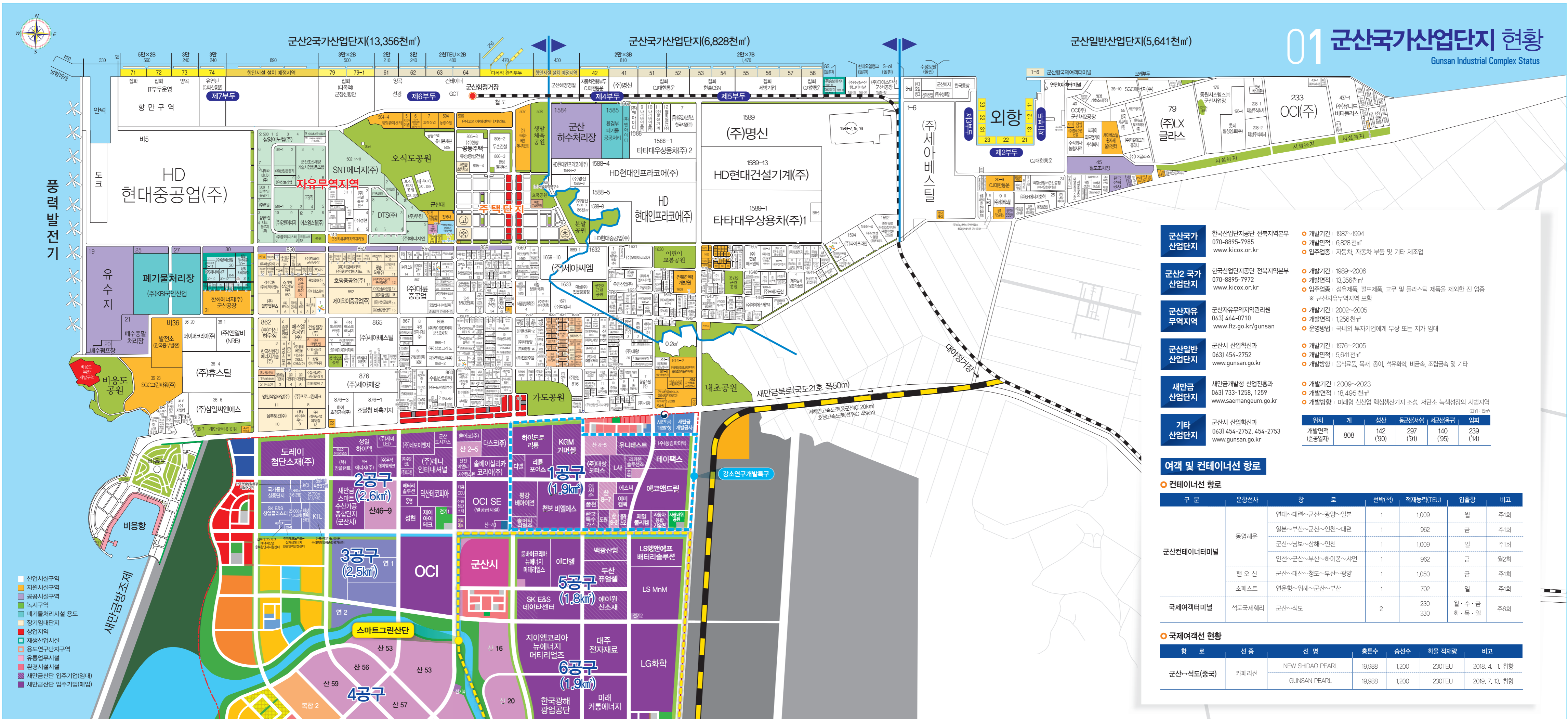
새만금 산업단지

고군산군도지구

- 01 군산국가산업단지 현황
- 02 입지여건
- 03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계획
- 04 기타 산업단지 현황
- 05 파격적 인센티브

01 군산국가산업단지 현황

Gunsan Industrial Complex Status



군산국가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070-8895-7985 www.kicox.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간 : 1987~1994 개발면적 : 6,828 천㎡ 입주업종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제조업
군산2 국가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070-8895-7972 www.kicox.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간 : 1989~2006 개발면적 : 13,356 천㎡ 입주업종 : 섬유제품, 필름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한 전 업종 ※ 군산자유무역지역 포함
군산자유 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063) 464-0710 www.ftz.go.kr/guns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간 : 2002~2005 개발면적 : 1,256 천㎡ 운영방법 : 국내외 투자기업에게 무상 또는 저가 임대
군산일반 산업단지	군산시 산업혁신과 063) 454-2752 www.gunsan.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간 : 1976~2005 개발면적 : 5,641 천㎡ 개발방향 : 음식료품, 목재, 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조립금속 및 기타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 063) 733-1258, 1259 www.saemangeum.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간 : 2009~2023 개발면적 : 18,495 천㎡ 개발방향 : 미래형 신산업 핵심생산기지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
기타 산업단지	군산시 산업혁신과 063) 454-2752, 454-2753 www.gunsan.go.kr	

여객 및 컨테이너선 항로

○ 컨테이너선 항로

구분	운항선사	항로	선박(척)	적재능력(TEU)	입출항	비고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동영해운	연태~대전~군산~광양~일본	1	1,009	월	주회
		일본~부산~군산~인천~대전	1	962	금	주회
		군산~남포~상해~인천	1	1,009	일	주회
		인천~군산~부산~하이퐁~사면	1	962	금	월2회
		팬오션	군산~대전~청도~부산~광양	1	1,050	금
국제여객터미널	석도국제해리	연운항~위해~군산~부산	1	702	일	주회
		석도국제해리	군산~석도	2	230 230	월·수·금 화·목·일

○ 국제여객선 현황

항로	선종	선명	총톤수	승선수	화물 적재량	비고
군산~석도(중국)	카메리선	NEW SHIDAO PEARL	19,988	1,200	230TEU	2018. 4. 1. 취항
		GUNSAN PEARL	19,988	1,200	230TEU	2019. 7. 13. 취항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 장기임대단지
- 상업지역
- 재생산업시설
- 용도연구단지구역
- 유통업무시설
- 환경시설시설
-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임대)
- 새만금산단 입주기업(매입)

02 입지여건

Location Conditions

동아시아를 포함한 풍부한 배후 시장과 광역적 교통인프라 구축 등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적 교통인프라

공항

- 군산(국제)공항 확장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선 취항 추진, 국토부 제5차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새만금 신공항 반영 ※ **예타면제**

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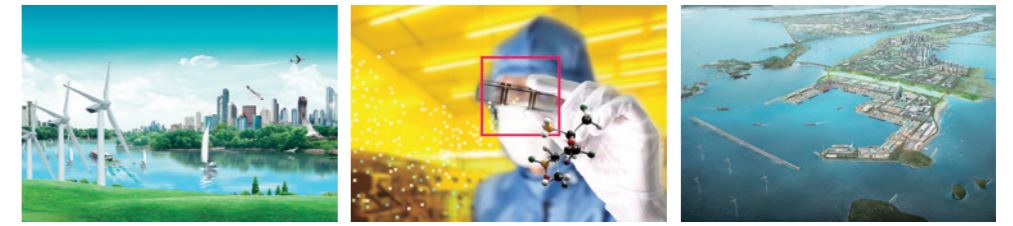
- 군산항(31선석 보유) :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 지원 항만 선정
- 새만금신항만(9선석 규모) 건설 :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섬 방식으로 건설, 항로수심 20m이상 확보로 대형선박 입출항 가능 (2011년말 착공하여 2030년까지 6선석, 2040년까지 9선석 추진)

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20분), 호남고속도로(35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45분) 거리
-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구축

철도

- 새만금산업단지를 거쳐 새만금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새만금과 군산(대야)간 복선 전철 2025년 완공(총 연장 45km)
- KTX 서울-익산간 1시간대, 익산-새만금(20분)



동북아경제중심지 새만금

세계최장의 33.9km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확정으로 동북아경제중심지를 향한 새만금의 힘찬 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구로서 창조적 녹색·수변도시로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는 미래, 기회, 약속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 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일원
- 규모 : 409 km² (매립 291, 담수호 118)
- 주요시설 : 방조제 33.9km, 방수제 77km, 배수갑문 2개소(656m)
- 사업비 : 22,2조원
- 사업기간 : 1991~2023년
 - >1단계(17년까지) : 선도사업 가시화
 - >2단계(18~22년) : 민간투자 확산
 - >3단계(23년 이후) : 내부개발 가속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008~2023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지식창조형 산업과 환경친화형 산업의 메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갑니다.

- 위치 및 면적 : 군산시 인접 새만금 지역 18.5km² (560만평)
- 개발방향 및 유치전략 : 한·중 FTA 산업단지 단독 선정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장 조성,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이 만나는 청정복합산업도시 조성, 첨단부품소재, 기계, 조리기기,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유치, 유치업종 관련 R&D기관 등 유치

새만금 관광단지 2008~2030

새만금 관광단지는 대규모 골프단지,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문화·공연시설 등을 조성하여 체험·체류형 관광레저 공간을 태어납니다.

- 위치 및 면적 : 부안군 인접 새만금 지역 9.9km² (300만평)
- 개발방향 및 유치전략 : 새만금방조제-고군산군도-반도 국립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테마파크, 대규모 골프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명품아울렛 등 쇼핑센터, 문화시설, 공연시설 등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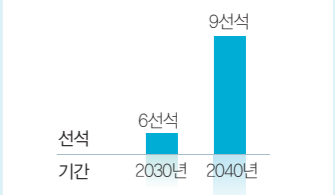
고군산군도지구 2008~2022

고군산군도지구는 새만금방조제, 반도반도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만들어집니다.

- 위치 및 면적 : 군산시 옥도면 신시·무녀·선유·장지도 일원 4.36km² (132만평)
- 개발방향 및 유치전략 : 한·중 FTA 산업단지 단독 선정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장 조성,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이 만나는 청정복합산업도시 조성, 첨단부품소재, 기계, 조리기기,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유치, 유치업종 관련 R&D기관 등 유치

새만금 신항만 2008~2040

- 위치 및 면적 : 개발면적 4,514천m² (배후부지 3,880천m²) 점안시설 2,97km
- 2030년까지 : 6선석 (1단계 2조 6,139억원)
- 2040년까지 : 9선석 (2단계 6,338억원)
- 개발방향 및 유치전략 : 서해 중부권의 물류 중심 관문항으로 개발



03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계획

Sale Plan of Industrial Complex in Saemangeum Area



새만금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수상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산업현장, 쾌적한 정주환경, R&D 연구지구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환경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안의 더 큰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합니다.



토지이용 계획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합 계		
			면적(㎡)	비율(%)	
합계			18,465,287.0	100.0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10,170,540.2	55.0	
	산업시설용지		8,465,328.2	45.8	
	연구시설용지		1,237,129.0	6.7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105,027.2	6.0	
	상업용지	계	230,979.0	1.3	
		중심상업	0.0	0.0	
	업무용지	계	151,516.0	0.8	
		국제업무	51,986.0	0.3	
	일반업무		99,530.0	0.5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		449,494.2	2.4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공동주택		계	653,578.0	3.5	
		연립주택용지	0.0	0.0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848,320.6	31.8	
	계		5,838,234.6	31.7	
	도로		2,449,782.9	13.3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주차장		119,387.0	0.6	
	광장		12,633.0	0.1	
	공원		1,370,001.0	7.4	
	완충녹지		290,97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경관녹지		588,524.0	3.2	
	공공녹지		10,222.0	0.0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498.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 · 충전소		10,086.0	0.1		

입주 행정절차

투자상담

- 부지, 면적, 업종적정성 및 입주가능여부 사전검토

사업제안서 제출
(기업→새만금개발청)

- 입주희망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 작성내용
 - 업체현황, 생산제품현황, 투자규모 등

입주적정 검토

-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한 입주 적격여부 판단
- 검토내용
 - 입주업종, 자금조달능력, 면적, 환경영향 등

MOU 체결

투자기업 {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

입주계약 신청
(기업→새만금개발청)

- 신청내용
 - 입주형태,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

분양계약 체결
(기업→한국농어촌공사)

- 분양면적 확정, 용지매매계약서 작성 등

대금납부

- 일시납 또는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준공전) 토지사용승인 신청
(기업→한국농어촌공사)

- 사용승낙 조건
 - 매매대금 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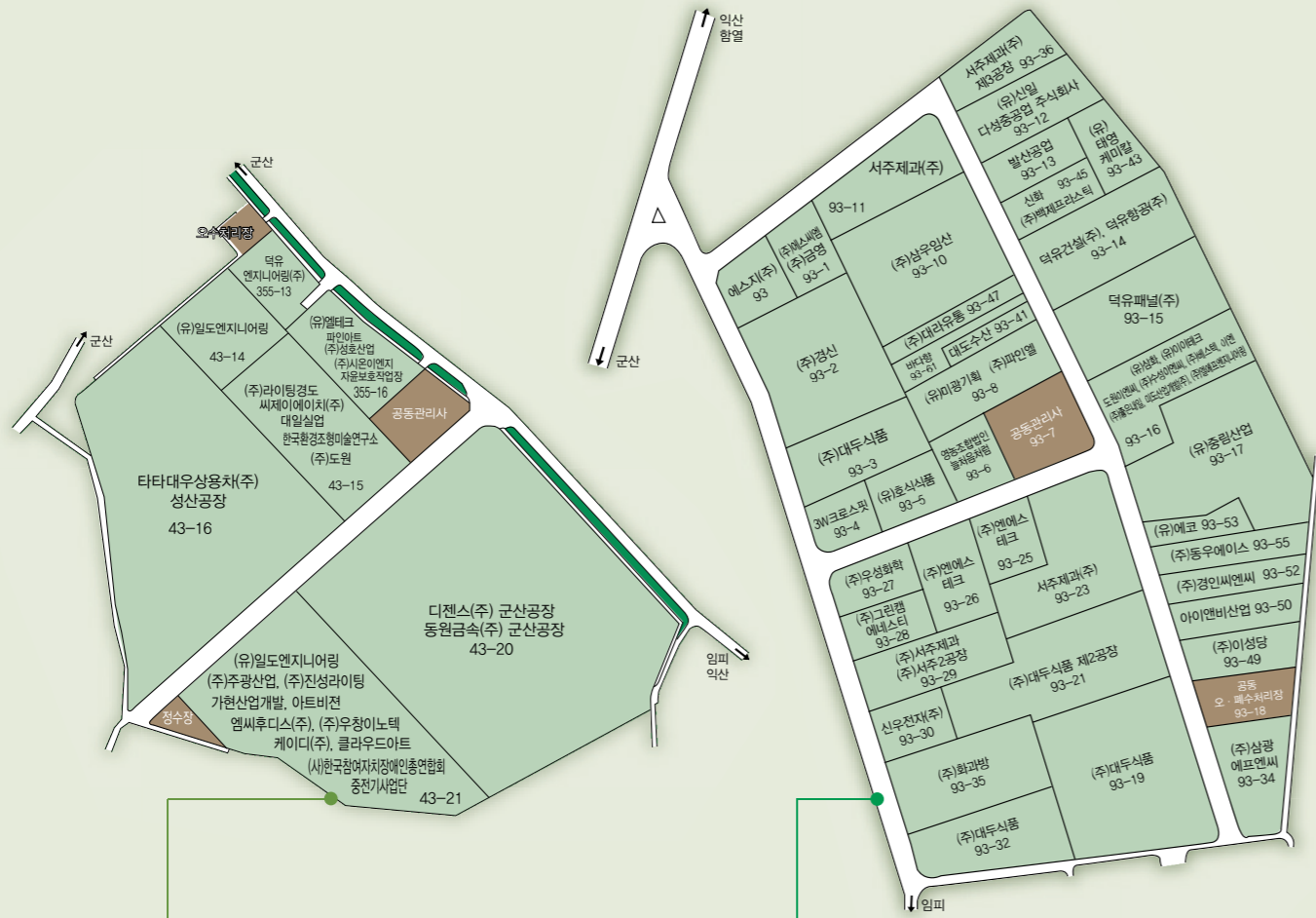
건축허가 신청
(기업→새만금개발청)

- 공장(건축물) 건축허가(새만금청 정보민원담당관)

04 기타 산업단지 현황

Other Industrial Complex Status

·군산시 063) 454-2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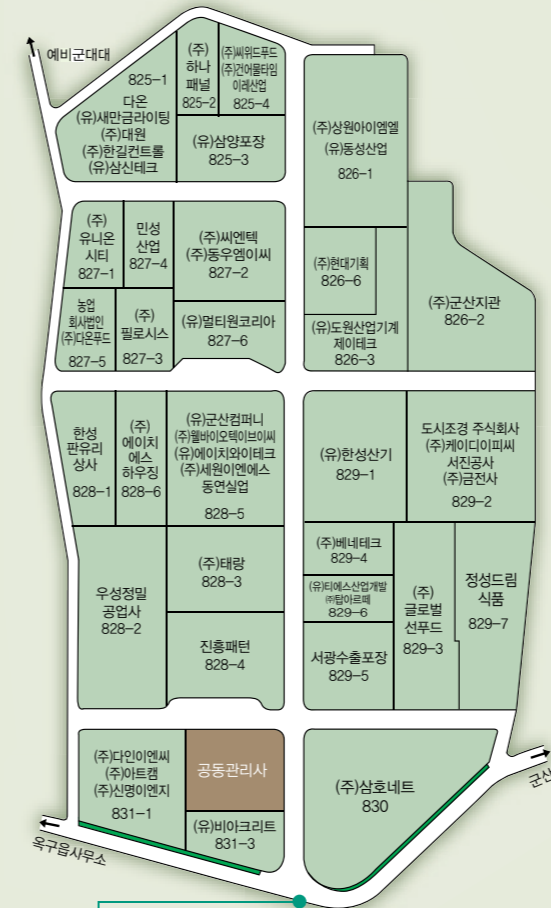


성산 산업단지

- 개발기간 | 1987. 7~1993. 11
- 개발면적 | 141,541㎡
- 입주업종 | 기계, 금속, 전기, 비금속

동군산 (서수) 산업단지

- 개발기간 | 1989. 10~1991. 4
- 개발면적 | 286,728㎡
- 입주업종 | 식품, 목재, 기계금속 등



서군산 (옥구) 산업단지

- 개발기간 | 1993. 10~1995. 2
- 개발면적 | 140,093㎡
- 입주업종 | 식품, 섬유, 목재, 기계, 금속



임피 산업단지

- 개발기간 | 2012. 6~2014. 6
- 개발면적 | 239,151.1㎡
- 입주업종 | 기계, 금속, 전기, 자동차부품, 물류업, 기타제품 등

가동중
 건설중
 녹지공간
 휴 · 폐업
 미분양
 지원시설

05 파격적 인센티브

Special incentive

군산시 투자보조금 지원

※ 전제 조건 : 투자전 지자체와 MOU 체결 필수.

구분	지원내용	한도액	지원대상기업	
국 내 기 업	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이전	• 본점, 주사무용 건물 취득가액의 3% 범위내 • 임대료 정상가액의 50% 범위내(3년) • 시설·장비설치비 투자금액의 3% 범위내	2억원 2억원 2억원 • 전북도의 소재 기업이전 •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공장전부 또는 일부 이전	• 토지구입(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포함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5% 범위내 ※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50억원	
	국내복귀 기업	• 1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 3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50억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선정된 기업
	창업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내 - 신규투자금액 30억 이상인 기업 - 신규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제조업	20억원	•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토지구입(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포함한 투자금액 5% 범위내 • 이전 근로자 정착지원금 1명당 월 10만원(3년내)	100억원	• 국내기업 •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관광업은 200명 이상)
	신·증설기업 지원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3% 범위내 - 신규투자금액 10억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 이상 증가	5억원	• 1회에 한함 • 신설기업이 3년내 증설시 추가 지원
	기존기업 시내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 5% 범위내 -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포함	50억원	• 전북도내 사업 영위 • 시내 미분양부지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계·자동차부품 제조업, 첨단업종
	시내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 증설 투자금액의 2% 범위내	20억원	• 시내 기존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 300억원이상 증설투자 • 고용인원 100명 이상 공장으로 증설
	고용 보조금	•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내 지원 (생산자서비스업은 월 30만원)	2억원	•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신규채용 인원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10~50만원 6개월 범위내 지원 (생산자서비스업은 월 30만원)	2억원	•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교육훈련 인원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산업단지 보조금	• 입지지원 - 정상임대료 차액의 50% 이내 - 정상분양가 차액의 30% 이내 • 설비투자지원 : 국내기업 지원 기준 준용 ※ 입지지원과 설비투자지원은 중복 불가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 수반사업 첨단영상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과 동일	각 2억원	
관 광 사 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 등 포함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내 ※ 기존 사업장 부지 및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제외	20억원	• 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 종합휴양업(골프장 제외), 종합유원 시설업, 연수원 •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과 동일	각 2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의 5% 범위내 -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 포함 - 동일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 투자금액	100억원	• 투자금액의 1,000억원 이상 •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 조례 24조(보조금의 이종자금 금지)



국가 재정자금 지원(국내기업)

지역 분류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최대 보조금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1개 기업당 최대 153억원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요건 충족시 최대 20% 가산 가능 (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10%, 고용인원 요건 충족시 최대 10% 가산)

- **지원대상 수도권 이전** : 이전前 수도권 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30명 이상 상시고용, 이전後 동일업종 영위, 30명 이상 상시고용,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 (기존공장 폐쇄 또는 매각)

신증설(입지 지원 제외)

- ① 투자前 국내 1년 이상 사업영위 & 10명 이상 상시고용, 투자後 신규채용이 現 고용인원의 10%(10명) 이상(기존공장 전부유지)
- ② 10억 이상 투자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국가 재정자금 지원(외국인투자기업)

구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현금지원	• (지원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외투기업 중 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결정 • 협상을 통해 결정, 최소 FDI 5% 이상
입지지원	• (지원조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FDI조건 : 제조업 3천만\$, 관광업 2천만\$, 물류업 1천만\$ 이상 • 임대료 감면 (지정 및 임대시 100% 감면)

세제 지원

구분	산업단지
지 방 세 (취득세·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사업개시일부터)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간 면제(단, 사업 양수시는 10년간) • 법인의 지방 이전시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5년간 75% 경감 • 창업중소기업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3년간 면제(그 다음 2년간 50%) • 농공단지 대체취득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5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공장이전 - 7년 100%, 3년간 50%
국 세 (법인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동지역만 포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